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51

발의연월일: 2020. 7. 2.

발 의 자 : 윤영석 · 윤창현 · 강기윤

윤두현 · 김태호 · 박덕흠

이종배 · 홍준표 · 배현진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주·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, 주·정차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법률상의 주·정차 금지구역은 아니며 행정안전부렁으로 차마의 주차나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주·정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통행하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.

이에 주·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·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2조제5호의2 및 제154조제10호 신설, 제34조의2, 제156조, 제160조, 제161조, 제162조).

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제34조의2 중 "제32조제7호"를 각각 "제32조제5호의2·제7호"로 한다. 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5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32조제5호의2를 위반하여 주·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 에 차를 주차하거나 정차한 사람

제156조제1호 중 "제32조"를 "제32조(제5호의2는 제외한다)"로 한다.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2조부터 제34조까지"를 "제3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32조제6호·제7호, 제33조, 제34조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제32조"를 "제3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32조제6호·제7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부분 중 "제3항"을 "제3항 및 제4항"으로 한다.

④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32조제5호의2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, 비디 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수 없거나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5 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161조제1항제1호 중 "제3항까지"를 "제4항까지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2항(제49조제1항제1호·제3호, 제50조제1항·제3항, 제52조제2항, 제53조제2항,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해당한다) 및 제3항(제5조, 제13조제3항, 제15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29조제4항·제5항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"를 "제2항(제49조제1항제1호·제3호, 제50조제1항·제3항, 제52조제2항,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경우만해당한다), 제3항(제5조, 제13조제3항, 제15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29조제4항·제5항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경우 만해당한다) 및 제4항의"로하며, 제162조제1항 중 "제156조"를 "제154조제10호, 제156조"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모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 --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 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 법 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 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5의2.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6. • 7. (생략) 6. • 7. (현행과 같음) 제34조의2(정차 또는 주차를 금 제34조의2(정차 또는 주차를 금 지하는 장소의 특례) 제32조제 지하는 장소의 특례) 제32조제 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5호의2·제7호----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 역·시간·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 -----제32조제5호의2·제7호 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

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.

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

제15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 한다.

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제15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(科料)에 처한다.
 - 1. 제5조, 제13조제1항부터 제3 항(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 도로, 자동차전용도로,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)까지 및 제5항, 제14조제2항·제3항·제5항, 제15조제3항(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), 제15조의2

법률 제17371호 도로교통법
일부개정법률
제154조(벌칙)
<u>.</u>
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제32조제5호의2를 위반하여
주·정차가 금지된 어린이 보
호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정
차한 사람
제156조(벌칙)
1

제3항, 제16조제2항, 제17조제 3항(제151조의2제2호, 제153 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), 제18조, 제19조제1항·제3 항 및 제4항, 제21조제1항·제 3항 및 제4항, 제24조, 제25조 부터 제28조까지, 제32조, 제3 3조, 제34조의3, 제37조(제1항 제2호는 제외한다), 제38조제 1항, 제39조제1항·제3항·제4 항·제5항, 제48조제1항, 제49 조(같은 조 제1항제1호·제3호 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 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 은 제외한다), 제50조제5항부 터 제7항까지, 제51조, 제53조 제1항 및 제2항(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), 제62조 또는 제73 조제2항(같은 항 제1호는 제 외한다)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

제32조(제5호의
<u> 2는 제외한다)</u>

2. ~ 12. (생 략) 제160조(과태료) ①·② (생 략)

-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, 제13조제1항·제3항, 제14조제2항에 하, 제15조제3항(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7조제3항, 제23조, 제25조제1항·제2항·제5항, 제27조제1항, 제29조제4항·제5항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,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사진,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 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 는 경우(제15조제3항, 제29조 제4항·제5항, <u>제32조</u>,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

2. ~ 12. (현행과 같음)
ll 160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같음)
③
제32조제1호
부터 제5호까지, 제32조제6호·
제7호, 제33조, 제34조,
1
제32조제1호부
터 제5호까지, 제32조제6호·
<u>제7호</u>

2. (생 략)<신 설>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.
- 1. ~ 4. (생 략)
- 제1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 저
 - ①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·징수한다.
 - 1.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
 1. ------제4항까지

 (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

2. (현행과 같음)
④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32조
제5호의2를 위반한 사실이 사
진,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
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
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
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
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
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
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56조
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
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과태
료를 부과한다.
⑤ 제3항 및 제4항
1. ~ 4. (현행과 같음)
세1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
①

로 통행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,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, 제53조의 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,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)의 과태료: 지방경찰청장

2. 제160조제1항(제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, 제 2항(제49조제1항제1호·제3호, 제50조제1항·제3항, 제52조제 2항, 제53조제2항,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제3항(제5조, 제13조제3항, 제 15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29조제4항·제5항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의 과태료: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3. • 4. (생략)

② (생략)

2
<u>제2항(제49조</u>
제1항제1호·제3호, 제50조제1
<u>항·제3항, 제52조제2항, 제53</u>
조제2항, 제53조의3제1항 및
조제2항, 제53조의3제1항 및 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
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
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 우만 해당한다), 제3항(제5조,
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 우만 해당한다), 제3항(제5조, 제13조제3항, 제15조제3항, 제
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, 제3항(제5조, 제13조제3항, 제15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29조제4항·제5
제53조의3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), 제3항(제5조, 제13조제3항, 제15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17조제3항, 제5조제3항, 제5조제3항,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

3. •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